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1호

2026년 제1회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채용 시험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미화원)	1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ㅇ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 ㅇ 분리수거 등 환경미화 관련 업무 ㅇ 그 밖에 기관장이 부여하는 업무

2. 근무 조건

가. 신 분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7.1.1.예정, 필요시 조정)로부터 정년(만 65세)까지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보수 : 월 2,156,880원(세액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전)

라. 복리후생 :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및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보수 및 복리후생은 재직기간 및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마.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주5일 근무

※ 근무시간은 미화 작업을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가. 공통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지역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ㅇ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200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고,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만 65세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우대사항(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우대요건	제출서류
1. 준고령자(50세 이상~55세 미만)·고령자(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민등록초본
2.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환경미화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적극적 전형)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심사기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전형)**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전형)**

※ 적극적 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등(아래 참조)

○ **(가산점)**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및 같은 규정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붙임1>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 시 적용(응시인원 3배수 초과인 경우)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법」 등 법정가산점은 미적용 함

○ **(동점자 처리)** 3배수로 합격자 결정시 최종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2차)

○ **(심사기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정요소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 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제1차(서류전형)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가산특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본 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제3항 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이 1명임**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특전은 적용되지 않음**

5.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02.(월)~11.13.(금)	11.11.(수)~11.13.(금)	11.20(금)	11.25.(수)	12.11(금)

※ 시험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공휴일 및 평일 12:00~13:00 제외)

ㅇ (접수일시) 2026. 11. 11.(수) ~ 11. 13.(금), 09:00~18:00

ㅇ 접 수 처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우)54014,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채용담당자 앞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원서 재중)	063-441-2222

나. 접수방법

ㅇ 등기우편 및 접수처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6. 11. 1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안내사항 》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서식	비 고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1	자필 또는 PC로 기재 / 서명 자필(성명)
② 이력서 1부	붙임 2	자필 또는 PC로 기재 / 서명 자필(성명)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4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⑤ 가족채용제한 여부확인서 1부	붙임 5	자필 또는 PC로 기재 / 서명 자필(성명)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6	자필 기재 및 서명 자필(성명)
⑦ 응시자 서약서 1부	붙임 7	자필 기재 및 서명 자필(성명)
⑧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 8	자필 기재 및 서명 자필(성명)
⑨ 주민등록초본 1부	필 수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면제포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 원본에 한함
⑩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근무처에서 인사부서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원본 (근무처 인사부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⑪ 가점 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장애인등록확인서,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⑫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최종합격 예정자 동점자 처리기준 확인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로 처리

8.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원본에 한함)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합니다.

- ㅇ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부정합격한 사람은 합격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 ㅇ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우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본인 희망퇴직 등의 사정 등으로 결원보충 필요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예비합격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추가합격자 개별 통지)

- ㅇ 기본 응시자격을 구비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또는 적격자 없는 경우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다시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자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용 발생시 채용권자 부담

-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 바랍니다.

<별표 1>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산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산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산점 항목별로 중복 가산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산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제 출 서 류 체 크 리 스 트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하여 아래 순서대로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1. (필수) 응시원서 1부 ····· □ 제출 □ 미제출
2. (필수) 이력서 1부 ····· □ 제출 □ 미제출
3.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 제출 □ 미제출
4.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제출 □ 미제출
5. (필수) 가족채용제한 여부확인서 1부 ····· □ 제출 □ 미제출
6.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필수) 응시자 서약서 1부····· □ 제출 □ 미제출
8. (필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제출 □ 미제출
9. (필수) 주민등록초본(**뒷자리 기재, 병역사항 포함**) 1부 ···· □ 제출 □ 미제출
10. **(선택)** 근무경력(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11. **(선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2. **(선택)** 저소득층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3. **(선택)**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4. **(선택)** 기타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5. **(선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 미제출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서명)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자 격 증 : 응시자격증을 기재하되 자격증 사본 제출

④ 가 산 점 : 해당 대상의 경우 기재하되 증명서 사본 제출

⑤ **서　　명 :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할 것**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공무직 근로자 (미 화 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주 소	(㉮)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직급	공무직 근로자 (미 화 원)	성명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고사장 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주 소 (거주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구분	자격종목	자격번호	발급기관
자격증			

※ 해당자만 기재

경력사항	근무처(회사명)	근무기간 (부터~까지)	근무월수	담당업무(직무내용)

구 분	증명서 번호	증명서 발급기관
저소득층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번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번호	

위에 기재한 사항과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성 명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인)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③ 글꼴 : 휴먼명조, 글씨크기 : 13포인트, 글자색 : 검정

[붙임 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성 명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인)

【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그간 경력 등을 작성

②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③ 글꼴 : 휴먼명조, 글씨크기 : 13포인트, 글자색 : 검정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채용담당자 작성)*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채용 시 필요한 제반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 시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학력,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7]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1.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채용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다.

< 시험위원과의 특수한 관계 >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이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2.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응 시 자 (서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